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대전가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3르1147(본소) 등 판결 [이혼 등]

❑ 요점 및 설명

1. 개요

○ 당사자

원고 : 1964년생 여자

피고 : 1964년생 남자

○ 사건개요

- 제1심 : 원고는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에 의하여 이혼과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가 결혼 전에 완납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분할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하였다.

- 피고의 항소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본소 위자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피고의 보험과 관련하여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완납하거나 납입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항소이유로 제시하였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6. 9.자 2007스111 결정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비록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하기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

인 점,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원·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 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각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을 유지함).

❑ 항소심 판결문

※ 사생활보호를 위해 이름과 지역 등을 비실명으로 하고, 표제부와 증거기재 부분 등을 생략함

○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생략함)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및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위 항소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 명시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피고의 일부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라.항 부분(제9쪽 10째 줄 이하)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9호증을 추가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분류된 ○○○보험 해지환급금 9,843,354원은 피고가 2003. 6. 20.부터 2012. 7.까지 9년간 납입해 온 것으로서 그 중 2003. 6. 20.부터 동거전인 2006. 12. 31.까지 3년 6개월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은 피고가 순수하게 납부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인 해지환급금은 5,906,012원 뿐이고, △△△보험 해지환급금 4,613,569원은 혼인전인 2005. 6. 12. 보험료 납입이 끝난 것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9.자 2007스111 결정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인 점,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원·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 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위와 같은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쓰는 부분]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재산분할의 방법과 원·피고의 각 재산상황 및 당사자 상호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소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손왕석(재판장), 고춘순, 김은영

□ 제1심 판결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 11. 7. 선고 2012드단6162(본소) 등 판결

※ 사생활보호를 위해 이름과 지역 등을 비실명으로 하고, 표제부와 증거기재 부분 등을 생략함

○ 주문

1. 본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시 ○○동 *** ○○○○아파트 제***동 제****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기한 이혼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140,271,371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정주부이고, 피고는 1989. 3. 30.경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 ○○공장에서 기술자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2006. 9. 17.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2006. 12. 31.경부터 동거하다가 2007. 11. 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전남편과 사이에 2남을 두었고, 피고는 전처와 사이에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두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면서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 1-2회 술을 마시게 되면 원고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 12. 31.경 ○○시 ○○동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2008.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다니고 있던 ○○주식회사에서 받은 중간퇴직금 42,000,000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8. 24. 원고와 피고 각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0. 10. 21.경 술을 마시고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입은 적이 있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 48평인 이 사건 아파트가 너무 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자 이 사건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하면서 원고가 다시 새로 구입할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툼이 커졌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2. 4. 8.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반으로 나눈다(단 대출 1억은 제외한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적이 있다.

자. 원고와 피고는 2012. 5. 8.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부 소유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차. 원고와 피고가 2012. 7. 26.경 다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자 원고는 피고와 살던 집을 나와 쉼터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따로 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현재 상호간에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생략함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재혼하였다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하여 현재 1년 이상을 별거하면서 상호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호간에 재결합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재혼하여 원고가 피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생활의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하기를 고집하면서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갈등관계가 깊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생활비를 모두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 동생에게 임의로 4,300만 원 이상을 빌려 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원고로서도 가정생활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본소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3. 10.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1.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및 가액

별지명세표(생략함)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단순히 그 명의만을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위 재산 또한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명세표 기재 재산 외에도 피고 명의의 '강원도 P군 00읍 00리 *** 답 5008㎡ 토지(이하 'P군 소재 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Y군 00면 00리 *** 전 2803㎡ 토지(이하 'Y군 소재 토지'라 한다)'도 각 재산의 취득·형성에 원고가 기여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유지·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Y군 소재 토지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인 1984. 12. 10.경부터 소유해 오던 것이고, P군 소재 토지는 피고가 부친 소유이던 토지를 ○○○을 거쳐 ○○○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것을 그 명의를 회복하면서 2007.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토지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Y군 소재 토지에는 그 지상에 있던 분묘를 이장시켜 토지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P군 소재 토지는 원고와 혼인 후에 피고가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면서 원고가 일정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다. 재산가액

1) 원고의 순재산

총합계 22,578,358원

피고는 원고가 ▲▲▲ 계좌에 입금한 43,181,438원도 원고의 ▲▲▲ 혹은 △△△에 대한 채권으로서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경 ▲▲▲명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동생 △△△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가 2011. 11. 6. 사망한 후인 2012. 3. 8.경 △△△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의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원고도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의 재산상속을 모두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위 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이상 위 채권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임의로 위와 같이 원고 동생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그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한 이상 이는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순재산

260,606,058원 (= 피고의 적극재산 합계 371,400,992원 - 피고의 소극재산 합계 110,794,934원)

3) 분할비율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326,0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피고는 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대금 169,000,000원에 매도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60,000,000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사실, 위 대출금 16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00시 00면 00리 **** 제###호와 ○○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각 처분한 대금 및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여 받은 대금으로 상환한 사실, 원고는 2008. 3. 24.부터 2008. 9. 4.경까지 화장품 대리점에서 일을 하여 수입을 얻었고, 2010. 6.부터 2011. 5.까지 마을통장으로 일을 하면서 월 2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 외에는 가사에 종사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인 점,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각 기여정도,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협의이혼 과정에서 일정한 재산을 주기로 약정한 사정, 다만, 원고도 피고와 협의 없이 43,000,000원 이상을 원고의 동생에게 임의로 대여하고 그 채권을 상실하여 재산형성에 소극적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35 : 65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순재산에서 원고 몫

총재산 283,184,416원(= 원고 순재산 22,578,358원 + 피고 순재산 260,606,058원)

원고 몫 76,536,187원[= 비율에 따른 분할액수 99,114,545원(= 283,184,416원 X 35%) - 원고 순재산 22,578,358원, 원미만 버림]을 약간 상회한 금액인 77,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강두례